

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성과 고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) 및 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)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16일

전주시 덕진구청장



1.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: 붙임 참조
2. 좌표 및 표고 : 붙임 참조
3. 경도와 위도 : 붙임 참조
4. 설치일,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: 붙임 참조
5. 측량성과 보관 장소 : 전주시 덕진구청 민원지적과

붙임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성과내역 1부.